
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위원회 논의 결과

□ 개 요

○ 필요성

- 제도 시행 이후 개선·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,
-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검토, 개선방안은 논의하는 공식 기구 운영

⇒ 제도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및 국민 만족도 향상

○ 추진 경과

- 장기요양위원회 위원, 자문위원 그룹,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에 개선·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('08.9.10 ~ 9.25)
-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: 9.30(1차), 10.14(2차), 10.22(3차)
- 제도개선위원회는 장기요양위원회 실무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
- 구성 : 위원장(정형선 교수), 가입자측 4명(민노총, 경총, 경실련, 노인회), 공급자측 4명(시설협회, 재가협회, 간협, 의협), 공익위원 2명(복지부, 보험공단) 등 총 11명

※ 향후 추가 제도개선 과제가 있거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의 제도개선 국민제안 과제에 대하여 심의 예정

□ 제도개선 과제 선정

- 의견 수렴('08.9.10 ~ 9.25) 결과 45개 과제에 대하여 검토
 - 연구용역이 진행 중 사항은 제외(중·장기 검토)하고 수가관련 사항은 (수가)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유사과제는 통합하여 우선 논의가 필요한 10개 과제 선정

□ 논의과제

- ①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
- ②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문제
- ③ 요양보호사 교육내실화, 자질 향상 및 (시설종사자) 처우개선 등
- ④ 외국인근로자 요양보험 적용 제외
- ⑤ 과징금제도 신설
- ⑥ 요양시설 축탁의 원외처방전 발급 관련

□ (추진현황 및 계획 등) 보고과제

-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평가체계
- 등급외자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활성화 방안

□ (즉시) 개선과제

- 등급판정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
- 급여비용 청구 프로그램 개선 등

※ 보고과제는 제도개선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추진

※ 개선과제는 즉각 관련 행정조치 및 지속 점검

□ 논의과제 결과

<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 >

○ 개 요

-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소득·재산 기준(법률에서 장관고시 위임한 사항) 마련, 제도 시행 이후 본인부담 증가 민원, 농어촌 지역 등 거주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(의원발의 법률안) 등

○ 논의결과

- 소득·재산 등 기준과 관계없이 농어촌 등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
- 6개월 ~ 1년 정도 시행상황을 지켜 본 후, 관련 자료축적을 통한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내년 정도에 구체적인 경감방법 등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
 - * 다른 사회보험과의 관계, 가입자간 형평성, 재정상황 등도 고려할 필요
- 다만,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전환자 등에 대하여는 우선 경감 필요

○ 향후계획

- '09년 상반기 중 우선 경감이 필요한 대상 고시
- '09.7월 이후 본인부담 경감 필요 저소득층 소득·재산 기준 검토

<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문제 >

○ 개 요

-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요양병원 간병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아 제도 시행 초기(7~8월) 보호자 및 병원관계자 민원 다수
 - ※ 우리부(보건복지가족부)는 '07년 요양병원 과잉 공급 추세, 병원-시설간 과열경쟁 등을 감안하여 간병비 지급을 유보함
-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에도 요양병원 과잉 공급 추세는 계속 되는 등 과열경쟁 양상 나타남

○ 논의결과

-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큰 상황변화 없으므로 향후 건강보험과의 역할정립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
 - ※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
- 요양병원 과잉문제, 시설·병원간 역할정립방안 등 구체적인 중·장기 계획 필요(요양병원협회)
 - ※ 건강보험에서 부담 의견(시설협회 등), 요양보험에서 부담 의견(의협)

○ 향후계획

- 장기적으로 검토하되, 우선 요양병원의 시설전환 지원, 「협약 의료기관제도(지정병원제)」 확산·정착,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퇴원 후 즉각적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토록 중점 관리

< 요양보호사 자질 향상 및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>

○ 개 요

-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과잉경쟁 및 부실교육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질 우려 → 교육 내실화 및 자질향상 필요
- 현재 시설 인력기준(입소노인 2.5당 1명)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 어려움,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확산 등 문제 제기(민노총)

○ 논의결과

- 요양보호사 교육 내실화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교육기관 평가 및 우수교육기관 선정,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보완 및 보급, 지도점검 강화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
 - * 실습과정 미흡, 실습교재·전담인력 양성 필요(민노총, 노인회 등)
 - * 교육 실태파악 후 인력수급계획 등 종합대책 마련 필요(민노총)
 - * 교육기관 신고제→지정제 및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는 문제는 노인복지법 개정과정을 지켜본 후 재논의 바람직(정형선)
 - *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개념 정립과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마련 필요(의협)
-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, 수가체제로 정규직·비정규직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,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문제는 가이드라인으로 임금이 수렴되는 부작용 우려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
 - * 종사자 처우에 정부제도가 직접 규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, 우회적 시스템 도입 바람직(경총)
 - * 서비스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(공단)

○ 향후계획

-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보완 및 보급('08.11월)
- 교육기관 평가('08.10월~'09.1월) 및 우수교육기관 선정 인센티브 제공
 - * 교육기관 평가결과를 복지부·시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개
- 『신고센터』 지속 운영 및 불시 점검 등 지도점검 강화('08.4월~)
- 교육기관 및 실습시설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실시('08.10~11월)
-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“신고제 → 지정제” 등 법률 개정 검토
 - *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상태

< 외국인근로자 요양보험 적용 제외 >

○ 개 요

- 국민권익위원회, 참여마당신문고,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 민원
- *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,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며 가족 동반 없이 근로 목적으로 입국, 대부분 60세 미만이고,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낮음에도 보험료 납부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가입제외

○ 논의결과

-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낮음에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의 필요성 공감
- 다만, 사각지대 발생 문제, 건강보험과의 관계, 법률개정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

○ 향후계획

- '09년 상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추진

< 과징금 제도 신설 >

○ 개 요

- 장기요양기관의 부당·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정취소, 영업정지 및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, 입소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 야기

⇒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신설
필요성 제기

- * 과징금 : 공익성이 강한 사업 분야에 있어서 사업(영업)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

○ 논의결과

-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입소자 및 이용자의 불편 야기 되므로,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의 신설 동의, 법률개정 추진

○ 향후계획

- '09년 상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추진

< 요양시설 축탁의 제도 개선 >

○ 개 요

- 장기요양기관에서 축탁의가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입소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으나('08.7월~)
 - 이 경우 “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”를 기준으로 한 처방전 발급비용(의원급 2,260원)만 산정되고 비축탁의 왕진은 불인정
- 한편, 요양보험에서도 축탁의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급액이 장기요양기관마다 다르고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있음

○ 논의결과

-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축탁의 인건비 지급(보상)에 대한 명확한 절차 마련의 필요성 공감
 - * 축탁의 보수 등 비용의 강제 규정화 반대, 자율적으로 체결 바람직 (시설협회)
 - * 현실적으로 왕진 사례 거의 없음. 시설내 간호인력의 역할·책임 대폭 강화. 중증 의료 문제는 병원이송 등 조치(시설협회)
- 구체적인 지급(보상) 절차에 대하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·검토기로 함

○ 향후계획

- '09년 중으로 명확한 축탁의 인건비 지급절차 마련